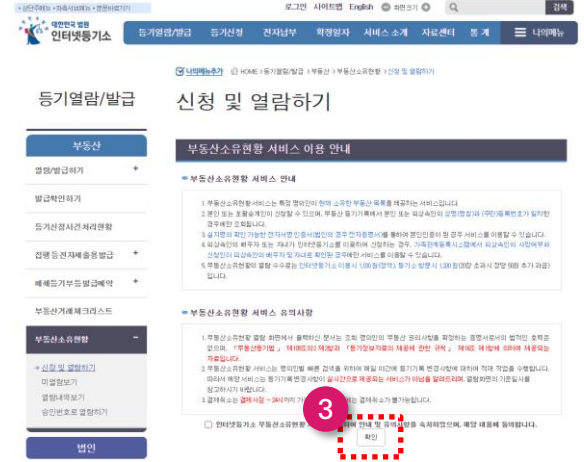


[부동산 소유현황 인쇄방법]

■ 인터넷 등기소 = <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>



-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
- 부동산소유현황 선택



- 부동산 소유현황 서비스 유의사항 확인



- 개인정보 입력 후 검색 (※주민등록번호 공개)



- 공동인증서 로그인

신청 및 열람하기

-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수수료는 1,000원 입니다.
-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문서는 조회 영역안의 부동산 권리사항을 확정하는 증명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, 「부동산등기법」 제108조의2 제2항과 「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」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.
- 부동산소유현황은 부동산 등기기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. 반드시 열람화면의 기준일시를 참고하게 바랍니다.

발판선택 | **포괄승계인신청**

신청인

신청인구분: 내국인

성명(영문):

(주민)등록번호: - - - - - 본인인증

공개여부: (주민)등록번호 공개

확인

- 공인인증서(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)를 통한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인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

- 조회내역 - 결제선택(1,000원)
※ 소유결과 없을 시, 현재 화면 캡처 후, 출력 제출

부동산 소유 현황

■ 조회 대상

명의인 이름:
 (주민)등록번호: - - - - -

위 명의인으로 조회한 부동산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번호	구분	부동산의 표시	부동산고유번호	관할등기소
1	토지	서울특별시	1144-1996-	서울 지방법원 등기국
2	건물	서울특별시	1144-1996-	

— 이 하 여 백 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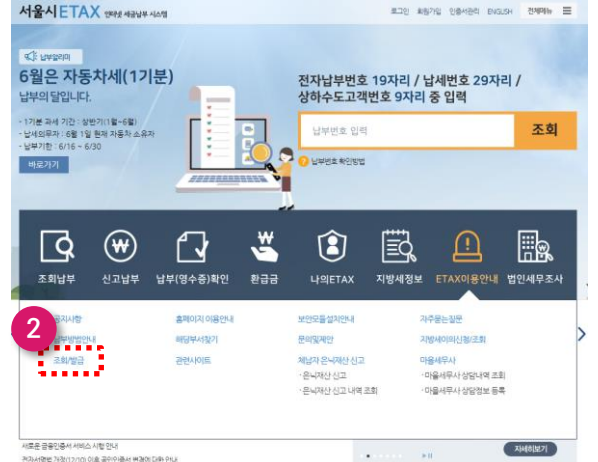
- 부동산 소유현황 출력

[건축물(주택의 건물) 시가표준액 인쇄방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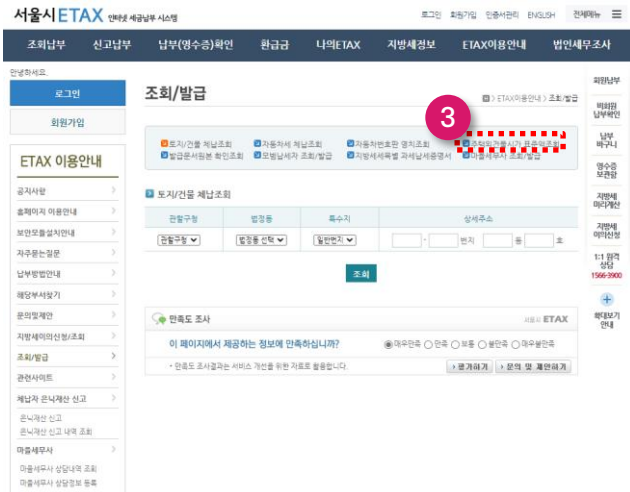
■ 이택스(서울지역) = <https://etax.seoul.go.kr> ※ 위택스(서울 외지역) = <https://www.wetax.go.kr>



① ETAX 이용안내 선택



② 조회/발급 선택



③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조회 클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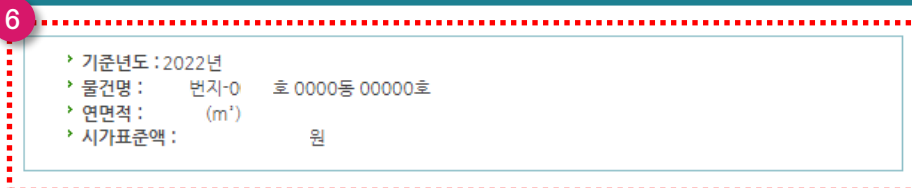
④ 건축물 정보 입력 후 검색

⑤ 건축물 상세보기 클릭

서울시 ETAX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

닫기

주택의 건물 시가표준액



※ 위 조회된 결과는 매년 1월1일자로 고시된 조정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임의시점 현황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오니 참고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.

※ 또한 1월1일 이후 신축/증축 등 조회되지 않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⑥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
※ 해당 화면 캡처 후, 출력 제출

[토지 소유현황 인쇄방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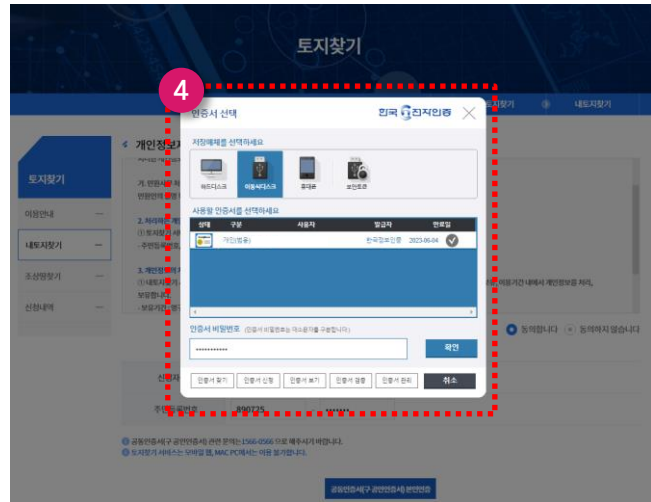
■ K-Geo플랫폼 = <https://kgeop.go.kr>



① 토지찾기 → 내토지찾기 선택



② 동의합니다. 체크
③ 성명,주민등록번호 입력 후, 공동인증서 인증



④ 공동인증서 로그인



⑤ 프린터 표시 선택

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

행정구역: 전국	출력일자: 2022년 06월 01일 17시 08분	1/1
성명(중성):	출력일시: 2022년 06월 01일 17시 08분	
등록번호: 890725-1-109626	가동기준: 국가공간정보센터	
신용구분: 본인	출력자:	
	직업번호: 65828	

토지소재	지번	지목	면적(m ²)	공유인수	소유권 변동일자 (변동일시)	소유자주소	개발지(가)권	출도지역 출도지구	유형
조회결과가 없습니다.									



본인 복제 및 기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하위 및 기타 부장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.

제공된 자료는 지적전산자료상의 소유자를 조회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, 성명, 한글 표기 방법, 누락 등의 오류로 인하여 검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아울러 본 자료는 개인 토지소유 증명서가 아닙니다.

- 제공된 자료는 등록번호, 성명 등의 원시자료 입력 오류, 한글 표기 방법 또는 누락 등의 원인으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제공된 자료가 등기부(소유자)에 합치 않거나, 또는 토지이용목적과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신청을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⑥ 해당 조회 결과 출력 제출